



호우·태풍 대비 사업장 조치사항

공통사항

- 집중호우·태풍 예비 특보 발령지역 사업장은 **재택근무 실시** 및 **휴가 적극 권고**
- 호우·태풍에 의한 **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**
* 산안법 제51조(사업주의 작업중지), 제52조(근로자의 작업중지)
- 호우·태풍 발생시부터 **기상특보 발령** 상황 상시 모니터링
* (기상청) 날씨누리 홈페이지, 기상특보 상황(날씨 > 기상특보 > 특보현황)

- ☑ 각종 시설물, 표지판, 자재 등 결속상태 점검
- ☑ 타워크레인 붐이 자유롭게 회전하도록 브레이크 해제(부러짐, 휨 방지)
- ☑ 강풍 시 철골조립, 양중작업 등 야외작업 중지

- ☑ 배수로, 배수시설 사전점검 및 정비
- ☑ 침수 위험 장소 빗물 유입 차단 조치
- ☑ 지하구조물 등 침수 우려 장소 작업 중지
- ☑ 침수된 장소에 인원 및 차량 출입통제 (감전, 질식 위험 확인)

붕괴

- ☑ 옹벽, 석축 등 붕괴 우려 장소 사전점검
- ☑ 방수포, 흙막이 지보공 설치 등 붕괴예방조치 실시
- ☑ 붕괴매몰 발생 우려 장소에 출입통제 및 통행금지
- ☑ 산사태 우려 지역은 사전 대비태세 유지 (비탈면 유실 여부 점검, 근로자 대피계획 수립 등)

감전

- ☑ 충전부 및 배전반 등으로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(침수 우려 시 전기설비 이전 설치)
- ☑ 누전차단기 연결, 외함접지, 절연상태 점검 및 보수
- ☑ 침수 등 손상된 기계·설비 점검 시 사전 전원차단 조치